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48,230,187	7,446,906
일반회계	243,496,761	7,304,903
특별회계	4,733,426	142,003
기타특별회계	4,733,426	142,003
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	587,741	17,632
기반시설특별회계	167,382	5,021
주차장운영특별회계	3,978,303	119,349

제 2 조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89,07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